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 번호	1438
----------	------

제출연월일: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현행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가운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일부 조례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 신뢰성 등을 높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입법기술상 효율적인 방식인 일괄정비 형식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안 제1조 외)
- 나. 「정부조직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및 본청 부서명칭 변경(안 제1조 외)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외)
- 라.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안 제5조 외)
- 마. 「지방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9조 외)
- 바. 기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일부학교의 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1)
- 다. 협의 : 조례 소관부서와 협의
- 라. 기타
 - 입법예고(2016. 10. 14. ~10. 21.)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2)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지역교육청”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의2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명칭란 중 “7 서울강서교육발전자문위원회, 8 서울강남교육발전자문위원회, 11 서울성북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7 서울강서양천교육발전자문위원회, 8 서울강남서초교육발전자문위원회, 11 서울성북강북교육발전자문위원회”로, 해당 교육지원청란 중 “7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8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11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을 “7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8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11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0조(「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1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조 제33호 중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초등학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초등학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보훈기본법」”를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하계동 78”을 “공릉로 264 (하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공업고등학교[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 (대방동)]

제25조(「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체육건강청소년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하급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발주기관명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미반영된 개정사항과 기관명칭,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박지훈(02-399-9185)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예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으로 한다.”를 추가 - 2014.5.28.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임조례 근거 조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반영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 포함 -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로 수정

관계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자치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